

소규모 합병 공고

넥센타이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넥센산기와 2014년 2월 24일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넥센타이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넥센산기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: 주식회사 넥센산기 = 1 : 2.3166315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가. 상호 : 주식회사 넥센산기
 - 나. 본사 소재지 :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79 번길 36-1(안동)
4. 합병기일 : 2014년 4월 30일
5. 본건 합병은 넥센타이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넥센산기는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 : 2014년 3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.
 - 나. 기 간 : 2014년 3월 11일 ~ 2014년 3월 24일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: 2014년 3월 24일까지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회계팀에 제출(055-370-5077)
 - 2) 실질주주: 2014년 3월 21일까지 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- 마.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넥센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넥센타이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넥센산기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 주 번 호	주 주 명
소유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

2014년 []월 []일

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
주 소 :

2014년 3월 10일

넥센타이어 주식회사

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355(유산동)

대표이사 이 현 봉(직인생략)